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4. 12. .

제출자 : 정 부

### 제안이유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계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분쟁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조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안 제23조의5 신설)  
본인확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및 직권조정절차 등(안 제44조의2, 안 제44조의14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료부터 해당 정보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는 때에는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 것으로 봄.

2)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임시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권조정결정을 하도록 함.

3)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정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분쟁조정 등(안 제44조의10, 안 제44조의13 신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하고,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함.

- 2)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여야 하며,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의 제시를 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징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4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2의 제목“(정보의 삭제요청 등)”을“(임시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를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로,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삭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리주장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의 사실 및 기간
2. 이의제기의 방법 및 절차
3. 이의제기 시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제44조의14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정보게재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 내에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사실
2.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3. 직권조정결정의 절차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의14에 따른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이 만료한 후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요청, 임시조치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제7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책임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

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게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의 사실 및 기간
2. 이의제기의 방법 및 절차
3. 이의제기 시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3항, 제4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6제1항 중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제44조의10제1항에 따른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제44조의10제1항에 따른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10의 제목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 위원회에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송, 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 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 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방송, 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것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⑧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다.

⑩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44조의1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4조의13(분쟁의 조정) ①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제시를 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44조의14(임시조치에 대한 직권조정) ① 제44조의2제6항에 따라 직권 조정절차에 회부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권으로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의 해제에 관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임시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송부받은 날을 직권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로 본다.

②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정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4조의15(조정 효력) 제44조의13제6항에 따른 조정조서 또는 제44조의14제2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 또는 직권조정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 제44조의13제6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한 경우
2. 제44조의14제3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가 없는 경우

제44조의16(자료 요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당사자에게 해당 분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17(조정 절차 등) ① 제44조의13부터 제44조의16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쟁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64조의3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의 정보제공 업무
6. 제44조의13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7. 제44조의14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업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 또는 임의의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4조의13(제3항, 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의10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라 한다)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으로서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가 승계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수락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는 그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의 가산금 징수기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사무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는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지체 없이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행한 행위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행위는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행위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 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 삭제-----  
-----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 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리주장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의 사실 및 기간
2. 이의제기의 방법 및 절차
3. 이의제기 시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④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제44조의14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정보게재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 내에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사실
2.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3. 직권조정결정의 절차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의14에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따른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이 만료한 후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요청, 임시조치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제7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책임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

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

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게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의 사실 및 기간
2. 이의제기의 방법 및 절차
3. 이의제기 시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3항, 제4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송, 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2. 관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 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 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방송, 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신 설>

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조정부가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심  
의·의결한 것은 분쟁조정위원  
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  
다.

<신 설>

⑧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⑨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는 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원  
할 수 있다.

<신 설>

⑩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운  
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1(위원의 신분보장) 위  
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

<신 설>

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44조의1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신 설>

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4조의13(분쟁의 조정) ①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30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제시를 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14(임시조치에 대한 직권 조정) ① 제44조의2제6항에 따라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권으로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의 해제에 관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임시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송부받은 날을 직권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로 본다.

②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정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에 대한 임

<신 설>

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4조의15(조정 의 효력) 제44조의13제6항에 따른 조정조서 또는 제44조의14제2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 또는 직권조정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 제44조의13제6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한 경우
2. 제44조의14제3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가 없는 경우

<신 설>

제44조의16(자료 요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당사자에게 해당 분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 제

2. ~ 3. (생 략)

4. 삭 제

5.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신 설>

<신 설>

-----  
-----  
-----  
-----  
-----  
-----  
-----  
-----

2. ~ 3. (현행과 같음)

5.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의  
정보제공 업무

6. 제44조의13에 따른 분쟁조정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7. 제44조의14에 따른 분쟁조정  
위원회의 직권조정 업무